

1. 개정이유

- 가. 체육시설 회원모집 시 모집공고가 게재된 신문 또는 인쇄물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전자파일의 제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 편의성 제고
- *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(국조실, '23.8월) 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조치 추진
- 나. 파크골프장,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(시행규칙 별표2)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
- 다. 체육시설법(“23.8.8. 개정),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(“23.6.7. 개정)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시행규칙(별표6 안전·위생 기준) 개정
- 라. 체육시설법(“20.12.8. 개정)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시행규칙(별표7 행정처분 기준)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(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) 회원모집 공고 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
- * (현행) 신문 또는 인쇄물 제출 → (개정안)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 가능
- 나. (별표 2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) 파크골프장,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신설
- * (현행) 체육관, 수영장, 테니스장 등 12종 → (개정안) 파크골프장, 풋살장 포함 14종
- 다. (별표 6 안전·위생 기준) 법령(체육시설법*,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**) 개정사항 반영
- * 어린이의 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등 안전·위생 기준 준수
- ** 인명구조요원 자격 기준 근거 조항 변경(제37조제1항제1호가목 → 제26조제1항제1호가목)

라. (별표 7 행정처분 기준) 체육시설법 개정사항 반영

* 개별기준(가~나) 등록·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: 제4조의3제3항 → 제4조의5제3항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3. 10. 00. ~ 1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”로 한다.

별표 2의 제1호 부분 중 “케이트볼장”을 “케이트볼장, 파크골프장, 풋살장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제2호 부분 중 “체력단련장”을 “체력단련장, 파크골프장, 풋살장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 제1호 차목의 부분 중 “게시해야 한다”를 “게시해야 하며,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어린이 이용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별표 6의 제2호 사목 (5) (라)의 부분 중 “제37조제1항제1호가목”을 “제26조제1항제1호가목”으로 한다.

별표 7의 제2호 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제4조의3제3항”을 “제4조의5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7의 제2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제4조의3제3항”을 “제4조의5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6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회원의 모집방법 등)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·도지사 또는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5조(회원의 모집방법 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-----.
1.~3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